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386호,  
2013.2.20, 제정]

## 【제· 개정이유】

### [제정]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상호 거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이 지난 후 사육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율을 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386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산이자율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말한다.

**제3조(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사항

2. 시정권고의 내용

3.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사항

» 축산법령

- 2. 시정명령의 내용
-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 4. 불복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0분의 100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

의 9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00	200	400
2)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3)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0	1,000	2,000
4)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500	1,000	2,000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	30	60	120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120	240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300	600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300	600

##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388호, 2013.2.2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1359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세히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안 제14조 및 안 별표 1)

- 1)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육시설 등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 허가기준을 마련함.
- 2) 축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사육시설 및 방역·위생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가축사육업 등록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